

‘차이나 이노베이션’의 작동원리와 한국 기업을 위한 시사점

2026.10.27

■ 뉴스레터 인사이트

- 중국 혁신은 ‘미국형 R&D + 한·일형 제조업’을 중국의 규모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저가·추격형에서 고부가가치·독자적 혁신형으로 전환 중임.
- 과학기술·첨단산업 투자 강화 기조는 최소 5~10년 지속되고, AI·바이오·양자가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 한국 기업은 생태계 단위 경쟁, 인재 유출, 한·중·미 양방향 규제 리스크를 공급망·IP·인재·통상·데이터 전반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핵심 요약

- 중국 혁신의 본질은 ‘미국형 연구개발(R&D) + 한·일형 제조업’을 중국의 규모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며, 과학기반(STI)형과 현장경험(DUI)형 혁신이 동시에 작동함.
- 중국은 ‘저가·추격형’에서 ‘고부가가치·독자적 혁신형’으로 전환 중이며, “응용엔 강하나 기초연구는 약하다”는 통념에서 벗어나고 있음.
- 국가주도 체제 안에 치열한 경쟁과 제도적 유연성(신형 연구개발기구, 예외적 인재 트랙)이 공존함.
- 과학기술 투자 강화 기조가 향후 적어도 5~10년 지속될 전망이며, 핵심 축은 AI·바이오·양자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연구자 과잉경쟁, 폐쇄적 인맥·학계 파벌 문화, 지방재정 악화, 국제협력의 보수화, ‘기술력이 곧 국민의 풍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음.

1. 중국 혁신의 특징 — 미국형 R&D와 한·일형 제조업의 ‘중국 스케일’ 융합

- **하이브리드 모델**: 중국은 미국형 R&D 모델과 한·일의 제조업 발전 경험을 중국 고유의 방식으로 결합하고, 이를 거대한 시장·인구·기업 규모를 바탕으로 대규모로 발전시켜 왔음. 그 결과 AI, 로봇, 전기차, 바이오, 양자 등 매우 폭넓은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추게 됨.
- **산업 생태계**: 중국의 강점은 개별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품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부품·소재·배터리·모터·제조설비가 중국 내에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는 점에 있음. 에어택시처럼 중국이 비교적 늦게 진입한 분야에서도 기반기술이 이미 축적되어 있어, 단기간에 제품화·사업화할 수 있음.
- **STI × DUI**: 대학·연구기관의 과학지식에 기반한 STI(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형 혁신과, ‘만들고·쓰고·상호작용’

용'하며 개선하는 DUI(Doing, Using and Interacting)형 혁신¹이 동시에 작동함.

⇒ 제조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연구→국내 제조현장 시험·개량→시장 출시'의 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쉽다고 평가됨.

- **'1을 길게'**: 2026년 3월 시진핑 주석은 독창적 기술이 '0에서 1'의 돌파에 그치지 말고 '1을 더 길게' 늘려 실험단계에서 응용·제품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함².

⇒ 이는 연구성과와 사업화 사이의 간극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가·산업 수요가 기초연구 방향을 강하게 규정하면서 연구자의 자율적 문제의식에 기반한 연구가 약화될 수 있다는 과제도 안고 있음.

- **폭넓은 인재 기반**: 중국에는 30~40대 젊은 연구자를 포함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그룹이 다수 존재함. 예컨대 아직 주도 기술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기술 분야에서도 각 방식마다 연구그룹이 포진해 있어, 어느 방식이 주류가 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연구인력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임.

2. 중국 혁신의 전환 — '저가·추격형'에서 '고부가가치·독자적 혁신형'으로

- **연구의 질과 독창성**: 최근 중국 학계는 논문의 양뿐 아니라 질과 독창성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됨. 분야별 편차는 있으나, "중국은 응용엔 강하지만 기초연구는 약하다"는 기존 통념만으로 현재 중국의 연구 역량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 **품질 중심의 제품 경쟁**: 고가의 로봇청소기 로보락(Roborock)이 서울 강남 소비자에게 선택받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중국 제품의 경쟁력 기반은 가격에서 품질·성능으로 확대되고 있음.
⇒ 중국 기업임이 드러나지 않는 브랜드명이나 매우 짧은 신제품 주기 같은 마케팅 특성이 있으나, 이는 품질이 낮다는 뜻은 아니며 일부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임³.

3. 과학기술 시스템 — 국가주도 속의 시장적 경쟁과 제도적 유연성

- **하향식 방향 설정과 상향식 경쟁의 공존**: 국가가 방향을 제시하면 대학·연구기관·기업·지방정부가 기업 유치, 연구시설 설치, 투자로 치열하게 경쟁함. 이처럼 '위에서 방향을 정하는 힘'과 '아래에서 경쟁하는 힘'이 공존함.
- **신형 연구개발기구**⁴: 중국과학원 등 기존 기관과 별도로 계약직 채용, 성과연동 급여, 해외·외부 인재 영입이 가능한 기관을 시범적으로 다수 만들고, 성과를 낸 기관은 강화하며 부진한 기관은 구조조정하는 방식임('시도하고, 성과가 난 것을 키운다').
- **유연한 인사와 보상**: 선전 등지에는 급여·인사제도가 유연한 기관이 자리 잡고 있음. 백 교수는 국가가 체제 내부에 '작은 미국' 같은 공간, 즉 비교적 자유로운 인사·보상과 경쟁이 가능한 연구환경을 허용하는 것을 중국의 강점으로 평가함.
- **우수 인재에 대한 별도 지원**: 해외의 탁월한 중국계 연구자를 유치할 때 통상적인 급여체계로는 제공하기 어려운 조건을 별도 체계로 제시할 수 있음. 이는 특정 개인에게 매우 높은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운 한·일과 대비됨.

4.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연구자 — 혁신의 동력이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쟁

- **성과에 따른 보상과 이동**: 중국의 젊은 연구자들은 성과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요구하고 더 나은 조건으로 이동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김. 이 점에서 중국이 일본보다 훨씬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오히려 미국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됨. 일부 대학에서는 급여 재원의 일부는 직위별로, 나머지는 성과별로 배분되어 같은 직위의 교수라도 성과에 따라 보상이 달라짐.
- **경쟁에 따른 부담**: 과도한 성과주의에 따른 경쟁 과열로, 연구성과·평가를 두고 연구자 간에 상호 고발·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함. 일부 최상위 연구자를 제외한 일반 연구자는 논문·연구비를 둘러싸고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임.
⇒ 이는 연구자에게 상당한 부담이며, 혁신의 강점과 연구환경의 가혹함은 동전의 양면임.
- **제도적 과제**: 2026년 4월 기초연구 좌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폐쇄적 인맥 문화(圈子文化)와 학계 파벌(学阀) 타파, 논문·최상위 학술지·인재 칭호('모자')·수상실적만 중시하는 '사유(四唯)' 경향 시정, 연구부정 엄단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인허천(阴和俊) 과학기술부장도 2026년 9월 논고에서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여전히 수준 높은 논문의 수, 연구과제 수, 연구비 규모, 연구자 칭호 등이 평가지표로 중시되고, 그 결과 학술부정과 과제심사 과정의 청탁(打招呼) 등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함⁵.

5. 향후 전망 — 전략기술 투자의 지속과 경제적 가치 전환 과제

- **투자 전망:** 경기 둔화와 함께 부동산 침체, 청년 고용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과학기술·첨단산업 투자 강화 기조가 최소 5~10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도 ‘기술 자립’ 인식이 강한 데 기인함.
- **3대 중심축:** 향후 중국의 주력 분야는 AI·바이오·양자로 전망됨. 특히 바이오는 산업적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미·중 경쟁, 안보, 의약품 자립, 의료비·사회보장과도 직결되어 매우 큰 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우주 분야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지속가능성:** 2025년 중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약 2.80%이지만⁶, 산업투자자금 등을 포함하면 전략산업에 투입되는 자금은 상당한 규모임. 고령화로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 집중될 경우 국민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 핵심은 투입 자원이 얼마나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고, 그 가치가 국민에게 어떻게 환원되는지에 있음. 중국의 다음 과제는 ‘기술을 만드는 힘’에서 ‘기술을 경제 전체의 풍요로 잇는 힘’으로 나아가는 것임.

6. 지방경제와 국제협력 —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변수

-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과거 토지·부동산 관련 수입을 활용하여 서로 경쟁하며 산업에 투자하였으나, 현재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됨⁷.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정책을 시행해도 연구자와 기업이 모이지 않아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도 상당히 큼.
⇒ 다만 중앙정부에 아직 일정한 재정 여력이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지원·조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문제가 중국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국제 공동연구:** 미·중 기술경쟁과 국가안보 문제를 배경으로 중국의 해외 공동연구·교류가 이전보다 신중해졌음.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연구상의 이점만으로 해외 협력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기술유출과 안보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짐.
⇒ 다만 중국이 국제 공동연구를 전면 중단한 것은 아니며, 이전보다 보수적·전략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는 향후 중국의 혁신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방향:** 향후 중국은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한편,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은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모든 지역과 산업에 일률적으로 투자하기보다, 성과가 부진한 분야와 지역은 정리하면서 AI·바이오·양자·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7. 한국 기업을 위한 5가지 인사이트

인사이트	해설
① 경쟁 단위는 ‘기업’이 아니라 ‘생태계’	중국의 강점이 부품·소재·설비가 중국 내에 상당 부분 갖춰진 생태계에 있다는 진단은, 한국 기업이 개별 중국 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경쟁 상대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중국은 후발 진입 분야에서도 ‘속도’로 격차를 메우는 구조이므로, 선점효과에 기반한 전략의 유효기간은 짧아질 수 있음.
② ‘1을 길게’는 산업정책의 신호	최고지도자의 ‘1을 길게’ 발언은 실용화·사업화 지원(보조금, 정부조달, 실증 특구)을 중시하는 산업정책의 방향을 보여줌. 구체적 지원 내용과 집행 여건에 따라 중국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거나, 통상분쟁(보조금·상계관세) 쟁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③ ‘저가 중국’ 프레임의 종언	강남 소비자의 로보락 선택 사례는 중국 브랜드가 고급 제품시장에서도 한국 기업과 경쟁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에 대응하는 제품·마케팅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브랜드 제품의 원산지·성능 등의 표시·광고가 정확한지 소비자보호 규제 측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음 ⁸ .
④ 인재 확보 경쟁의 비대칭성	중국의 예외적인 보상 체계와 성과연동 보상은 국내 기업 핵심인력의 유출 위험을 구조

	적으로 높일 수 있음.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기술·영업비밀 보호 체계와 전직금지 약정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⁹ .
⑤ 신중해지는 국제협력의 리스크	중국의 국제협력 기조가 보수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가 맞물리면 서, 한·중 공동연구·기술 라이선스·합작투자는 중국 수출통제법·데이터 규제와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등 양방향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 됨 ¹⁰ .

8. 한국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영역	점검 사항	관련 쟁점
공급망·투자	- 중국산 부품·소재 의존도 및 대체 가능성 파악 - 중국 합작·투자 구조의 투자 회수·철수 조항 점검	미국 대중 투자·수출통제, 경제안보 관련 국내 법령의 거래별 적용 여부 ¹¹
기술·IP	- 공동연구 계약의 지식재산 귀속·배경기술¹² 명확화 - 기술수출 승인·신고 요건 사전 확인	산업기술보호법, 중국 기술수출입 관리 규정의 적용 여부 ¹³
인재	- 핵심인력 보상체계 및 전직금지·비밀유지 약정 정비 - 이직 시 자료반출 점검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¹⁴
시장·통상	중국 보조금 수혜 경쟁제품의 국내 유입 모니터링	무역구제(반덤핑·상계관세), 표시·광고 규제의 적용 요건 ¹⁵
데이터·AI	중국 파트너와의 데이터 이전·AI 모델 공동개발 시 규제 적합성 확보	중국 데이터 3법,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인공지능기 본법의 적용 여부 ¹⁶

¹ 학술논문: 「지식의 형태와 혁신 방식」(*Forms of Knowledge and Modes of Innovation*) - Morten Berg Jensen, Björn Johnson, Edward Lorenz 및 Bengt-Åke Lundvall, *Research Policy*, 제36권 제5호, 2007, pp. 680-693. STI는 과학·기술 지식의 생산·활용에 기반한 혁신 방식이며, DUI는 생산·사용·상호작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학습에 기반한 혁신 방식을 의미함.

² 언론 보도: 「'0'에서 '1'로, 총서기는 왜 '1'을 길게 늘리라고 강조했나」(*习语 | 从"0"到"1", 总书记为何强调要把"1"拉长?*) - 인민일보 앱(人民日报客户端), 2026.3.10.

³ 시장분석: 「2025년 글로벌 가정용 청소로봇 시장: 중국 브랜드 주도 속 잔디깎이·창문·수영장 로봇 급성장」(*Global Home Cleaning Robot Market 2025: Chinese Brands Dominate as Lawn, Window, and Pool Robots Surge*) - IDC, 2026. 3. 10. 중국 청소로봇 기업의 시장 지위와 기술혁신 동향 관련 참고자료.

⁴ 공문: 「신형 연구개발기구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新型研发机构发展的指导意见*) - 중국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2019. 9. 12., 공문 번호 国科发政〔2019〕313号. 제8항(시장형 인사·보상), 제11항 제5호(해외 인재·국제협력), 제16항(평가·조정).

⁵ 연설: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서의 연설」(*在加强基础研究座谈会上的讲话*) - 시진핑(习近平), 2026. 4. 30. 연설, 《치우스(求是)》. 게재처: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2026. 9. 15.

기고문: 「더 큰 힘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해야」(*以更大力度更实举措加强基础研究*) - 인허쥔(阴和俊), 《치우스(求是)》 2026년 제18기, 2026. 9. 16.

설명: 圈子文化는 폐쇄적 인맥 문화, 学閥은 학계 파벌, 帽子는 인재 칭호를 뜻함. 위 연설에서 지적인 四唯는 논문·최상위 학술지·인재 칭호·수상실적만 중시하는 경향이며, 打招呼는 연구과제 신청·심사 과정에서의 청탁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의미함.

⁶ 통계공보: 「[2025년 전국 과학기술경비 투입 통계공보](#)」(2025年全国科技经费投入统计公报) - 중국 국가통계국·과학기술부·재정부, 2026. 10. 16. 제1부 연구개발(R&D) 경비 및 GDP 대비 비중.

⁷ 통계자료: 「[2025년 재정 수지 상황](#)」(2025年财政收支情况) - 중국 재정부 국고사, 2026. 1. 30. 제2부 정부성 기금 예산 수지: 지방정부성 기금 분급 수입은 전년 대비 8.2%,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수입은 14.7% 감소.

⁸ 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⁹ 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직·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지위, 제한 기간·지역·대상 직종,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및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¹⁰ 법령: 「[미국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15 CFR § 734.3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EAR 적용 대상 품목의 범위.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제2조](#)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0. 10. 17. 제정, 2020. 12. 1. 시행. 게재처: 중국 상무부.

법령: 「[데이터 국외이전 촉진 및 규범화에 관한 규정](#)」(促进和规范数据跨境流动规定)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2024. 3. 22., 명령 제16호.

¹¹ 공식 안내: 「[대외투자 안보 프로그램](#)」(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 - 미국 재무부. 미국인·미국 법인 등의 특정 반도체·양자·인공지능 분야 대상 거래에 관한 금지·신고 제도로, 당사자·지배관계·대상 기술 및 거래구조에 따른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법령: 「[미국 수출관리규정](#)」, 15 CFR § 734.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1조의2](#) - 각각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출통제와 국가핵심기술 수출·해외인수합병 등의 적용 여부 관련.

¹² 설명: 배경기술은 공동연구 시작 전에 각 당사자가 보유하거나 해당 프로젝트 외부에서 확보한 기술·지식재산을 뜻함.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 창출되는 성과와 구분하여, 배경기술의 범위와 상대방의 사용권을 계약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¹³ 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 중국 국무원, 2020. 11. 29. 개정. 게재처: 중국 상무부. 설명: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정부 연구개발비 지원 여부, 기술의 수출입 제한 여부 및 이전 방향·방식에 따라 승인·신고·허가·등록 요건을 검토함.

¹⁴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직·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또는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유효성을 판단함.

¹⁵ 법령: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및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설명: 무역구제는 덤핑·보조금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 법정 요건을, 표시·광고는 부당성 및 사실 관련 내용의 실증 여부를 검토함.

¹⁶ 설명: 중국 데이터 3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을 뜻함.

법령: 「[데이터 국외이전 촉진 및 규범화에 관한 규정](#)」(促进和规范数据跨境流动规定)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2024. 3. 22., 명령 제16호. 데이터 유형·이전 규모·면제조건 등에 따른 국외이전 절차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Shin&Kim-한양대학교 ERICA 업무협약(MOU)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7월 30일 한양대학교 ERICA와 중국·아세안 지역의 인공지능(AI)·디지털·첨단산업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세종에서는 중국팀과 글로벌비즈니스전략센터를 중심으로 AI센터와 통상산업정책센터 등이 협력 사업에 참여하며, 한양대 ERICA에서는 설립을 추진 중인 융합지역연구원 산하 글로벌 AI 첨단기술 연구센터와 아세안 경제통상 연구센터, 한반도 평화 연구센터가 실무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과 정부에 인사이트 높은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러한 양 기관 간 리소스에 기반하여 한양대 백서인 교수님이 「JST 아시아·태평양종합연구센터, 「チャイナ・イノベーション」をどう捉えるか－漢陽大学校ERICAキャンパス 白 西寅准教授, Science Portal China (2026.10.20)」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Shin&Kim 중국팀(China PG)

법무법인(유) 세종의 중국팀은 한중간 기업 인수합병, 합자법인 설립 및 운영 등 각종 중국투자, 다양한 특수산업 관련 중국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 각종 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자문, 한중간 국제분쟁해결 등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법률 수요에 대해서 종합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팀은 중국법에 정통한 한국 및 중국 변호사들이 유창한 한국어 및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여 양국 간 법률제도, 사업진행 방식 및 사업환경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 단계까지 고객의 입장과 시각에서 고객의 사업전략 및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은 북경, 상해에 중국 현지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국 현지 상황에 적합한 법률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Shin&Kim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센터 (GBSC, Global Business Strategy Center)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자문과 대응뿐만 아니라 국내외 산업정책,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시장조사, 진출 전략 수립, 규제 대응 등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련한 토탈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도록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글로벌비즈니스전략센터(Global Business Strategy Center: GBSC)를 출범시켰습니다.

GBSC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룹과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수행을 지원해줄 수 있는 외교·통상·산업계 출신 고문 및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미국/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관련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여 왔으며, 법무법인(유) 세종의 해외 사무소 및 현지 제휴 로펌들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구성원

김병국

전문위원

02-316-4353

bkkim@shinkim.com

김재영

전문위원

02-316-4225

jaykim@shinkim.com

원중재

변호사

+86-10-8447-5343

jjwon@shinkim.com

